

형사소송법

1.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이 피의자의 집에서 20 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의자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를서 압수한 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 칼과 합의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한 때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의 대상은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도 포함된다.

2.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②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③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즉결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주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한한다.
- ②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④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4.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 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 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③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5.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 ② 피고인의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 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적용된다.
-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6.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7. 공소권남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라 함은 직무상의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족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1차 무혐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여러 범죄를 일괄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 기소한 경우, 공소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
- ④ 공소권의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나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경우를 말한다.

8. 공소사실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가증권변조 사건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로 되어 있는 경우,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 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 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
- ④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는 기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9.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② 공소장일본주의
- ③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 ④ 영장실질심사제도

10.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 ②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 ③ 과형상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1.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 ②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 카피나 이미지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12. 변사자 검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 ② 검시는 검증과 유사하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시를 하여야 한다.
- ③ 변사자의 검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의사에게 위촉하여 사체를 해부할 수 있다.
- ④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13.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 한 것은 적법하다.
- ③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 ④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범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범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4.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 증거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된다.
- ④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다.

15.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② 201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을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③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④ 검사가 수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없고, 추가기소 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16.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배심원들 사이에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무죄의 평결을 한다.
- ③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7.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사문서위조 및 소송사기가 문제된 피고사건에서 제3자가 절취하고 소송사기의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압수한 피고인의 업무일지가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사소추를 위하여 당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당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된 비밀녹음은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증거물 A를 압수하고, 며칠 뒤 영장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증거물 B를 압수한 경우, 증거물 B는 위법수집증거이다.

18.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
- ②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 ③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 ④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19.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 ③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복사한 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한 새로운 문서파일에서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 ④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 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 ② 즉결심판절차에서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며, 그 법정에는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포함)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26. 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이 2019. 12. 6. 15:00 동해항에 입항한 대한민국 국적 상선의 선원 乙을 해상강도살인죄로 긴급체포하였다. 다음 甲의 조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선원 乙이 선실에 보관하고 있던 도끼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2019. 12. 7. 14:00에 상선의 선장을 참여하게 한 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② 甲은 긴급 압수한 흉기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12. 8. 14:00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③ 甲은 2019. 12. 8. 15:00까지 관할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선원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④ 甲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다음 중 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이 수사를 행함에 있어,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혈액을 범죄 증거의 수집목적으로 취득·보관할 수 있으나,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8. 다음 중 강제처분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사전적 구제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보석 ② 형사보상
-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9.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구속집행 당시 영장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영장을 제시받아 그 기재된 범죄사실을 숙지하고 있으며, 구속 중 이루어진 법정진술의 임의성 등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라면, 그 자백을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사유의 판단은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에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30.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된 구호 의무에 위반하여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축빠기 절도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 ②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1. 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은 피고인 乙이 바지선을 타고 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제보를 받고, 항내에 도착한 바지선을 수색하였다. 경찰관 甲은 선용품창고 선반 위에 숨어 있던 피고인 乙과 필로폰을 발견하여, 필로폰 밀수입 및 밀입국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경찰관 甲은 필로폰 약 6.1 kg을 제시하고 “필로폰을 임의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압수될 경우 임의로 돌려받지 못하며,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필로폰을 임의로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피고인 乙은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라는 말과 함께 승낙을 받아 필로폰을 압수하였다.

-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 ③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④ 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은 피고인 乙이 바지선에서 임의로 제출한 필로폰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32.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 ③ 피고인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33. 수사상 감정유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므로 감정유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보석에 관한 규정도 수사상 감정유치에 준용된다.
- ④ 수사상의 감정유치 대상은 피의자에 한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34.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
- ②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룰 수 있다.

35. 구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장실질심사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헌법」 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④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36.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형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 ③ 범인이 수 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하지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 ④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반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7.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38. 소송행위의 대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 | | |
|----------|------------------|--------|
| ㉠ 고 소 | ㉡ 상 소 | ㉢ 재정신청 |
| ㉣ 변호인 선임 | ㉤ 자 백 | ㉥ 공소제기 |
| ㉦ 고 발 | ㉧ 대표자에 의한 범인의 대리 | |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9.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동행의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에 데려간 행위는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다.
- ③ 이전의 임의동행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6시간이 지난 후 정상적인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그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 ④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의자를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의자는 동행당시에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였으며, 비록 술에 취하였으나 동행요구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경우 동행의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다.

40.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시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 ②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본과 분석의뢰서
- ③ 공소장
- ④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